

**제가 항소하는 문서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각 문서는 식별명 및/혹은 식별번호가 있습니다. 문서의 식별정보는 일반적으로 문서 상단이나 하단에서 확인됩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상무부, 심사위원회("위원회")가 발행하는 상급기관 판정의 소송사건일람표 번호는 판정 첫 페이지 우측 상단에 배치됩니다.

**상급기관 판정에 반대한다면 법원에 제소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고등법원 판사에게 상급기관 판정 및 소송 기록의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등법원 재심 신청은 사법재심 신청이라 합니다. 귀하는 심리를 위해 판사 앞에 출두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신청서를 적절히 제출 및 송달하지 않을 경우, 동 국은 신청 기각 동의안을 제출하며 판사는 동의안에 대한 변론을 심리합니다. 귀하의 신청이 적절히 제출 및 송달되고 법적 요건 일체에 부합하는 경우, 판사는 귀하의 신청과 위원회에 제출된 증거, 위원회 결정을 검토합니다. 판사는 (1) 사실확정을 입증하기 위해 동 위원회에 적법한 기록 증거가 제출되고 (2) 제반 사실이 법률의 결론 및 상급기관 판정을 입증하는지 검토한다. N.C. Gen. Stat. §§ 96-15(h) 및 (i) 참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상급기관 판정이 발행된 후 삼십(30) 일 안에 고등법원에 사법재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법재심의 신속한 신청이 고등법원에 제출되지 않는 한 동 판정은 최종 효력을 갖습니다. 상급기관 판정이 발행된 날짜는 판정의 최종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N.C. Gen. Stat. §§ 96-15(h) 및 (i) 참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은?**

귀하는 귀하가 거주하거나 주사업장이 있는 카운티에 소재하는 고등법원 서기에게 상급기관 판정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가 노스캐롤라이나 카운티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사업장이 없을 경우에는 노스캐롤라이나 웨이크 카운티 고등법원, 또는 논쟁이 발생한 노스캐롤라이나 카운티 고등법원 서기에게 사법재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N.C. Gen. Stat. § 96-15 (h) 참조.

**사법재심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을 고용해야 하나요?**

가능합니다. 청구인은 일반적으로 고등법원 소송절차에서 본인을 직접 대변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법원에서 정식 변호사에게 변호를 맡겨야 합니다. 고등법원과 같은 사법절차의 대리는 노스캐롤라이나 일반법령 제 84장 및 노스캐롤라이나 변호사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귀하는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물색할 수 있는 곳은?**

노스캐롤라이나 변호사협회 변호사 소개 서비스 (800) 662-7660나 노스캐롤라이나 법률구조 무료전화 (866) 219-5262로 문의하거나 지역전화번호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사법 재심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동 위원회 및 고용보장국은 사법재심 신청서 내용을 알려줄 수 없습니다. 귀하는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할 수

**고등법원 서기를 제외한 타인에게 사법재심 신청 사본을 제공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사법재심 신청서를 제출한 후 십(10) 일 안에 인편이나 영수확인부 증명우편을 통해 상급기관 판정에 기재된 소장 송달을 위해 고용보장국 등록 대리인에게 사본을 송달해야 합니다. N.C. Gen. Stat. §1A-1, Rule 4(j)(4) 참조. 아울러 신청서를 제출한 후 십(10) 일 안에 동 위원회 및 동 국에 제기된 절차의 당사자 전원에게 인편이나 영수확인부 증명우편을 통해 신청서 사본을 송달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귀하가 고용주인 경우 청구인에게, 귀하가 청구인일 경우에는 고용주에게). N.C. Gen. Stat. § 96-15(h) 참조.

**모든 항소가 판정될 때까지 배상청구를 계속 제출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실업자는 모든 항소가 판정될 때까지 주간 증명을 계속 제출해야 합니다. 배상이 청구되지 않은 주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N.C. Gen. Stat. §§ 96-14.9 and 96-15(b)(2) 참조.

**고용보장법 사본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고용보장법은 노스캐롤라이나 일반법령 제 96장에 포함됩니다. DES 행정 규칙은 노스캐롤라이나 행정법 제4편, 제 24장에 포함됩니다. DES

## 청구인에 대한 특별 고지:

귀하가 기본 청구와 관련하여 실업보험 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종전에 수령하였으며 상급기관 판정이 해당 급여 전액이나 일부에 대해 부적격이나 실격을 판결하는 경우, 귀하는 N.C. Gen. Stat. § 96-18 (g)(2)에 따라 급여가 과다지급될 수 있습니다. 상급기관 판정으로 과다지급이 생성되는 경우, 동국 급여 무결성/급여지불 관리과가 작성하는 개별 과다지급 통지 또는 과다지급 결정이 귀하에게 우송됩니다. 과다지급 통지 또는 과다지급 결정은 특히 귀하의 과다지급액 및 이에 적용되는 처벌을 명시합니다. 과다지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상급기관 판정에 규정하는 대로 North Carolina 법에 따라 상급기관 판정에 대한 항소장을 고등법원에 제출하는 것이라는 점에

North Carolina 실업보험 프로그램은 North Carolina 상무부, 고용보장국(DES)에서 운영합니다. [www.des.nc.gov](http://www.des.nc.gov).

North Carolina 상무부 발행



NCBOR 572-E (Rev. 6/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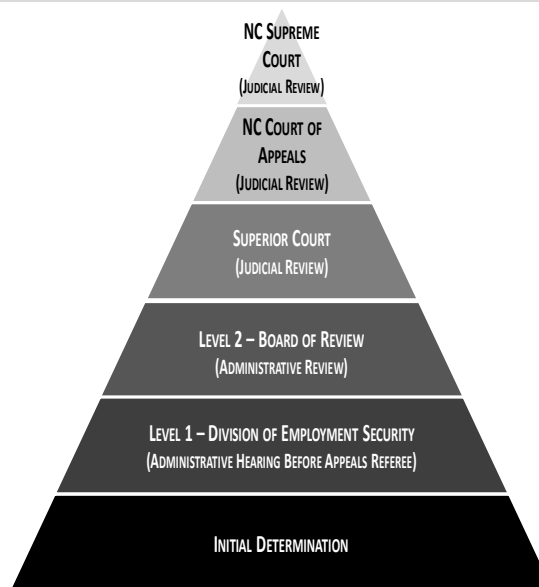
고용보장국 소장 송달 등록 대리인

소장 송달용

R. Glen Peterson  
법률고문  
NC 상무부, 고용보장국

우편 주소: Post  
Office Box 25903 Raleigh,  
NC 27611-5903

실제 주소:  
700 Wade Avenue  
Raleigh, NC 27608



## 사법재심

### 고등법원에 대한 상급기관 판정 항소

본 팸플릿에는 고용보장법에 따른 귀하의 권리에 대해 중요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본 팸플릿은 노스캐롤라이나 상무부 심사위원회의 상급기관 판정을 수령한 후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귀하는 법률로 정한 일체의 요건을

**2013년 6월 30일 이후 제출되는 배상청구의 청구인은 추후 항소에서 번복되는 결정에서 발생하는 초과급부를 상환해야 합니다. N.C. Gen. Stat. § 96-18(g)(2)**

항소에 대한 "FAQ"는 [DES 웹사이트](http://www.des.nc.gov) [www.des.nc.gov](http://www.des.nc.gov)를 참조하십시오..

